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해역의 위생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시행)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88조제3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70조제3항”을 “법 제70조제3항”으로,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지해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br>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br>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br>-----<br>-----.                  |
| 1.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해역에 대하여 조사·점검을 한 결과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br>-----<br>----- 국<br>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br>-----<br>-----<br>-----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br>-----<br>-----<b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br>에게 요청해야---.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br>-----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  
다.

1. · 2. (생략)

제88조(수산물 의 생산 · 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1. 생산·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패류양식시설은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해

고 시 해 야

1. · 2. (현행과 같음)

제88조(수산물 의 생산 · 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1.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  
 -----  
 -----

역에 있어야 한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시설: 법 제70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④ · ⑤ (생략)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조사·점검) ① 국립수산물  
과학원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결과를 종합하  
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생 략)

\_\_\_\_\_ •

2. \_\_\_\_\_  
 \_\_\_\_\_  
 \_\_\_\_\_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 \_\_\_\_\_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법 제70조제3항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시·도지사에게 통지해

야 한다.

제90조(조사·점검) ① -----  
-----  
-----  
-----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  
지해야----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 및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②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확인해야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통지해야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고시해야 ----.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                          |
|---------------------------|--------------------------|
| 없이 그 사실을 <u>고시하여야</u> 한다. | ----- <u>고시해야</u> -----. |
|---------------------------|--------------------------|